

의안번호	2215804
의 퇴 인	윤재옥의원
회 답 일	2026.4.6.
추계번호	25B744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조의3 신설 (운임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의 수납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철도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0조의3 신설 (운임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 미납자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납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사업자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납위탁에 따른 체납관리 및 강제징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행정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미납 운임 및 부가운임에 대한 수납위탁 여부, 미납 운임 및 부가운임 발생 규모, 강제 징수 건수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규모와 행정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한국철도공사·SRT와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표 1] 한국철도공사·SRT 부정승차 적발건수

(단위: 건수)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코레일	140,573	173,018	203,007	240,241	284,664	184,565
SRT	48,651	57,909	128,928	200,355	242,208	176,179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표 2]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적발건수

(단위: 건수)

구 분	계		무표미신고		우대용카드부정		할인권 부정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96,809	9,098	17,393	747	158,696	7,400	20,720	951
2025.6.20.	26,908	1,292	1,653	74	19,110	922	6,145	296
2024	60,719	2,957	4,834	222	52,275	2,560	3,610	175
2023	49,692	2,254	3,698	157	41,228	1,886	4,766	211
2022	59,490	2,595	7,208	294	46,083	2,032	6,199	269

자료: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2025.6.30.)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